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20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 박성민·정동만·강민국

김석기 • 태영호 • 한무경

임이자・김영식・金炳旭

허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판매 대수가 20만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유서비스 이용자 수도 최근 1년 간 약 4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다섯 배 이상 규모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임.

올해 12월부터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들도 별도의 교육 또는 시험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 및 면허제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한편,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둘 이상이 탑승한 채로 운행하는 행위 등은 안전사 고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위반 시 처벌 규정 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획득한 16세 이상의 자에 한해 개인

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또는 과료(科料)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 제46조의3, 제47조제1항, 제50조제3항, 제80조제1항·제3항, 제82조제2항제1호, 제83조제1항제1호, 제84조제1항제4호, 제92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54조제2호, 제156조제1호).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 중 "자동차등(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3항 중 "원동기장 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1항 단서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1호 중 "자동

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1항제4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중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제1항 중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제1항 중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4조제2호 중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0조제5항·제6항 ·제7항·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	
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	
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	
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u>자동차</u>	<u>자동차</u>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u> </u>
<u>다)</u>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u>자동차</u>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u>자동차</u>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u> </u>
<u>다)</u>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	
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u>자동차등(개인형</u>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①·② (생 략)
- ③ 이륜자동차와 <u>원동기장치자</u> 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 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 ④ ~ ⑩ (생 략)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u>자동차등</u>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원동기장치자
<u>전거</u>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 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 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략)
-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할 수 있는 <u>자동차등(개인형</u>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구조 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1803	조(운전면허) ①	
		- — -
	<u>「교통</u> 으	
<u>의</u>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 기
<u>1호</u>	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	1호
도_	시속 20킬로미터 이하豆	<u> </u>
운 전	<u>행될 수 있는 차</u>	
2	(현행과 같음)	
(3)		
	키 드 키 드	
	<u>자동차등</u>	
		- —
4	(현행과 같음)	
법	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823	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
(현	행과 같음)	
(2)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 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 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1
<u>자동차등</u>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 다.

- 2. ~ 8. (생략)
- ③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 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 1.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u>
 <u>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u>
 <u>다)</u>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 2. ~ 5. (생략)
- ② ~ ⑤ (생 략)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u>.</u>
2.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1. 자동차등
1. <u>사동사능</u>
O F (원위기 기호)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 4. 군(軍) 복무 중 <u>자동차등(개</u> <u>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u>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 람
 - 5. ~ 9. (생략)
 - ②·③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u>자동차등(개인형</u>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1. ~ 3. (현행과 같음)
4 <u>자동차등</u>
5.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u>자동차등</u>
<u>.</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 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 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다.

-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
 에 취한 상태에서 <u>자동차등</u>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 2. ~ 20. (생략)
- ② ~ ④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1
<u>자동차등</u>
2.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자동차등의 운전) ①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	
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	
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	
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	
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u> 자동차등</u>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u>다)</u> 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	
된 것으로 한정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을 가지고 국내에서 <u>자동차등</u>	<u>자동차등</u>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②·③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 한다.
 - 1. (생략)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4조(벌칙)
/ 10년교(현 기)
.
1. (현행과 같음)
2

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 9. (생략)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 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한 사람
3. ~ 9.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1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제24 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 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 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제 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 · 제3호를 위반하 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 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 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 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 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 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 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 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 면전차의 운전자 2. ~ 12. (생 략)

<u>제50조제5항·제6항·제</u>
<u> 7항ㆍ제10항</u>
2. ~ 12. (현행과 같음)